|  |  |  |
| --- | --- | --- |
| **항구입국면세점 관리잠행방법 보충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상무주관부문, 관광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재정부에 주재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 전문요원 사무처:  항구입국면세점의 건전한 발전을 한단계 더 촉진시키고, 관련 항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입찰평가기준의 제정을 지도하며, 입찰기업의 실제상황을 엄격히 감별하고 지속발전능력 가능성을 갖춘 경영주체를 선발하여 정책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항구입국면세점 관리잠행방법>(재관세[2016]8호)(이하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충규정을 만든다.  1. 입찰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항구입국면세점의 경영주체는 반드시 다양한 경영품종, 합리적 가격 책정, 국외 소비 회귀를 이끄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주민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며, 관광소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목표를 가속화 하여야 한다.  2. 입찰활동은 면세품 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증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차별성 조항을 설정할 수 없고, 경향, 제한 또는 입찰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정행정구역 또는 특정한 실적을 가산점이나 낙찰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단위책임자가 동일인 또는 지배 및 관리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일 경우, 동일한 입찰단계의 입찰이나 입찰 단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동일한 입찰항목에 참가할 수 없다.  3. 항구입국면세점 임대료 수수료수준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하여 ‘가격이 높은 자가 득하’는 편파적인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재무지표가 입찰평가 중 점유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지표는 입찰견적 중의 가격부분을 가리키며, 최저임대료,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입찰자는 항구 동일 종류 장소의 기존 임대료, 판매수수료 수준에 근거하여 최고입찰가격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임대료 단가는 원칙상 동일 항구 출국 면세점 또는 국내 세금 포함 소매업 임대료 평균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수수료는 동일 항구출국면세점 또는 국내 세금포함 소매업 평균 수수료 비율의 1.2배보다 높을 수 없다.  4. 기업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발전능력 가능성을 갖춘 경영주체를 선발하여야 한다. 경영품종 중에서도 특히 담배주류 외 품종의 다양성 정도는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기술지표는 입찰평가 중 점유율이 50% 보다 낮을 수 없다. 기술지표 환산치 중, 점포 구조와 설계 계획 20%, 브랜드 유치 30%, 운영계획 20%,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는 3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브랜드 유치 환산치 중, 담배주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입찰평가 업무절차를 규범화 한다. 입찰평가과정은 입찰문건 1차심사, 문제규명 및 입찰논의와 비교평가 3단계로 구분하고, 매 단계별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낙찰자는 인테리어비 반환, 세후이윤 반환, 발전기금 등의 방식으로 입찰기업에 대한 변칙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 입찰자 및 소재정부는 보조금, 재정반환 등의 방식으로 낙찰기업에 대한 변칙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  7. 항구 소재지의 성(구, 시) 재정청(국)은 항구입국면세점 입찰항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재정부에 주재하는 지방재정감찰 전문요원 사무처는 입찰절차와 정책실현상황에 대한 행정감독 직책을 이행하고, 주요 직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7.1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확정방식 및 입찰평가 전문가의 선발과 입찰평가 활동이 법적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7.2 입찰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입찰활동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수리를 책임지고, 업무의견 제출 후 재정부에 보고한다.  7.3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의 항구입국면세점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 공고 2016년 제19호)와 <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8. 본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8년 3월 29일 |  | **关于印发口岸进境免税店管理暂行办法补充规定的通知**  财关税﹝2018﹞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商务主管部门、旅游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为进一步促进口岸进境免税店健康发展，指导相关口岸制定科学规范的招标评判标准，从严甄别投标企业实际情况，选定具有可持续发展能力的经营主体，实现政策初衷，现就《口岸进境免税店管理暂行办法》（财关税﹝2016﹞8号）(以下简称《办法》)做出如下补充规定：  　　一、招标投标活动应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等有关法律法规的规定。口岸进境免税店的经营主体须丰富经营品类，制定合理价格，服务于引导境外消费回流，满足居民消费需求，加速升级旅游消费的政策目标。  　　二、招标投标活动应保证具有免税品经营资质的企业公平竞争。招标人不得设定歧视性条款，不得含有倾向、限制或排斥投标人的内容，不得以特定行政区域或者特定的业绩作为加分条件或者中标条件。  　　单位负责人为同一人或者存在控股、管理关系的不同单位，不得参加同一标段投标或者未划分标段的同一招标项目投标。  　　三、合理规范口岸进境免税店租金比例和提成水平，避免片面追求“价高者得”。财务指标在评标中占比不得超过50%。财务指标是指投标报价中的价格部分，包括但不限于保底租金、销售提成等。招标人应根据口岸同类场地现有的租金、销售提成水平来确定最高投标限价并对外公布。租金单价原则上不得高于同一口岸出境免税店或国内厅含税零售商业租金平均单价的1.5倍；销售提成不得高于同一口岸出境免税店或国内厅含税零售商业平均提成比例的1.2倍。  　　四、应综合考虑企业的经营能力，甄选具有可持续发展能力的经营主体。经营品类，尤其是烟酒以外品类的丰富程度应是重要衡量指标。技术指标在评标中占比不得低于50%。技术指标分值中，店铺布局和设计规划占比20%；品牌招商占比30%；运营计划占比20%；市场营销及顾客服务占比30%。品牌招商分值中，烟酒占比不得超过50%。  　　五、规范评标工作程序。评标过程分为投标文件初审、问题澄清及讲标和比较评价三个阶段，对每个阶段的评审要出具评审报告。  　　六、中标人不得以装修费返还、税后利润返回、发展基金等方式对招标企业进行变相补偿。招标人及所在政府不得通过补贴、财政返回等方式对中标企业进行变相补偿。  　　七、口岸所在地的省（区、市）财政厅（局）对口岸进境免税店招标项目实施管理。财政部驻地方财政监察专员办事处对招标投标程序和政策落实情况履行行政监督职责，主要职责包括：  　　（一）对评标委员会成员的确定方式、评标专家的抽取和评标活动是否符合法定程序进行监督。  　　（二）负责受理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关于招标投标活动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投诉，提出工作意见后报财政部。  　　（三）监督《财政部 商务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旅游局关于口岸进境免税店政策的公告》（财政部 商务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旅游局公告2016年第19号）和《办法》的执行情况。  　　八、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财政部  商务部  文化和旅游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2018年3月29日 |